

대구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나324129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나32412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가단100193 판결

##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름

담당변호사 김홍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광석, 허소현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원

변론 종결2021. 3. 24.

판결 선고2021. 4. 21.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가단100193 판결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3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2018. 10. 29. 접수 E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2018. 10. 29. 접수 F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2018. 10. 29. 접수 G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2018. 11. 16. 접수 H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2018. 10. 29. 접수 G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6,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8,415,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8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1) D는 I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 B은 J 주식회사 K 대구북부 대리점의

영업사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피고 B은 I에 기존에 타던 중고차를 처분하고자 하는 신차 구입 고객들을 소개하여 오다가, 2018. 4. 13.부터 2018. 10. 23.까지 I의 딜러로 일하였다.

2) 원고는 2018. 6. 7. D와 사이에 D의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약정금액 2억 원을 약정이자율 연 5.9%, 지연손해금율 연 8.9%, 기간 2018. 6. 7.부터 2019. 6. 7.까지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재고금융 한도거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D에게 2018. 6. 22. 1,570만 원을(제1대출), 2018. 6. 29.

11,990,302원을(제2대출), 같은 해 7. 19. 14,190,468원을(제3대출) 각 대출하였다.

#### **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경위**

1) 피고 B은 2018. 6.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1자동차'라 한다) 중 지분 99%의 소유자였던 L에게 2018년형 M 차량을 판매하였다. 피고 B은 자신의 동생인 R의 계좌(S조합 T)를 이용하여 2018. 6. 20. D에게 9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는 L에게 2018. 6. 21. 100만 원을, 2018. 6. 22. 80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2018. 6. 22. 이 사건 1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피고 B은 2018. 6. 29. 위 R의 계좌를 이용하여 D에게 940만 원을 입금하였고, D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2자동차'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인 N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2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3) 피고 B은 2018. 7. 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3자동차'라 하고, 위 각 자동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O에게 P 차량을 판매하였다. D는 O에게 2018. 7. 19. 1,000만 원, 2018. 7. 23. 5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2018. 7. 19. 이 사건 3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 B은 2018. 7. 23. 위 R의 계좌를 이용하여 D에게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D로부터 2018. 6. 22. 이 사건 1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29. 이 사건 2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19. 이 사건 3자동차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라. D의 처분행위**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10. 29. 피고 B에게 이 사건 1, 2자동차 및 이 사건 3자동차 중 지분 99%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3자동차 중 지분 1%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7,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자동차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명의신탁(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 명의신탁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B은 J 영업사원이자 I의 딜러로서 신차를 구입하고 기존에 타던 중고차를 처분하는 고객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D의 계좌로 각 매수대금을 송금하였고, 위 각 자동차에 대하여 자릿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고자동차 딜러들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판매할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자동차가 판매될 때까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나,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그 명의로 상품용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어, 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딜러들이 매수한 자동차를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자동차는 피고 B이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매수하면서 그 등록명의를 I의 대표자인 D 앞으로 마쳐둔 것<sup>1)</sup>으로서 피고 B이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이행해야 하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sup>2)</sup>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7조에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D와 피고 B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피고 B의 의뢰로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결국 등록원부상의 각 소유자들의 의뢰를 받고 D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를 두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 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서범준**

**판사박치봉**

**판사서영애**

**별지**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는데,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D와 피고 B 사이에 중고자동차 관련 거래가 반복되는 과정에 있었던 금전 거래 경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 C에게 이 사건 3자동차의 지분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행위도 피고 C이 피고 B의 배우자임을 고려할 때 동일한 취지로 판단된다(위 지분 1%에 관하여도 2018. 11. 16. 피고 B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